

재해 후 소비자 보호조치
캘리포니아 유선통신 고객용

캘리포니아 주지사 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귀하의 거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유선통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, 지장¹을 받거나, 유선통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²되는 경우, 유선통화 제공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날로부터 최단 12 개월 내지 캘리포니아비상서비스국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한 기간 동안 가정 고객 및 소규모 사업(5 개 회선 이하)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.

1. 원거리 자동전송(remote call forwarding), 자동전송 원격 접속(remote access to call forwarding), 자동전송의 각종 사양(call forwarding features), 메시지 서비스(messaging services) 개시에 필요한 1 회의 활성화수수료 면제
2. 원거리 자동전송, 자동전송 원격 접속, 자동전송, 자동전송의 각종 사양,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1 개월치 요금 면제
3. 고객의 임시 주거지 또는 신규 영구 주거지에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및 고객이 원래의 주거지로 돌아간 후의 서비스 설치 비용 면제
4. 고객이 ‘내부배선플랜(Inside Wire Plan)’을 현재 이용 중인지에 관계 없이 임시 거주지에 설치하는 1 개의 잭 및 관련 배선작업 수수료 면제
5. 당사의 내부배선플랜을 이용할 경우 영구 거주지로 귀환 시 최대 5 개의 무료 잭 및 관련 배선작업 수수료 면제
6. 당사의 내부배선플랜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, 영구 거주지로 귀환 시 1 개의 무료 잭 및 관련 배선작업 수수료 면제

* * *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¹ “지장”이란 (1) 전화기의 신호음이 들리지 않거나, (2) 통화가 연결되지 않던가 아니면 서비스가 전혀 기능을 못하거나, (3) 재해로 인하여 서비스가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없어 911에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일컫음.

² “저하”는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,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음을 깨닫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예를 들어 잡음, 연결 실패, 지나치게 빠른 통화 중 신호음, 그리고/또는 911 전화를 포함하여 신호가 가다가 끊어지는 것 등이 있음.